

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돼지 사후 관리지침

◆본 고는 농림부가 지난 1월 15일 발표한 경기·인천 지역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지역에 대한 사후 관리지침입니다. 축주는 예방접종축 출하시 [별표]의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하고 읍·면에 신고해야 합니다...편집자 주◆

- 농림부 -

1. 목적

○돼지콜레라 예방접종축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한 돼지콜레라 확산방지 및 청정화 도모

2. 적용대상

○돼지콜레라 조기차단을 위하여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한 돼지에 적용

3. 예방접종축의 표시 및 이동제한

□ 예방접종 표시

○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돼지는 페인트 표시를 하고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도축시까지 관리

□ 이동제한 기간 및 도축장 출하허용

<위험지역>

○최종 발생건에 대한 살처분 조치후 최소 40일 경과후 임상관찰, 항체·항원검사, 역학조사를 실시,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(단, 해제일이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날부

터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일수를 가산하여 적용)

○1차접종 완료일부터 15일 경과후 도축장 출하 허용(이동제한 기간 중에는 지정도축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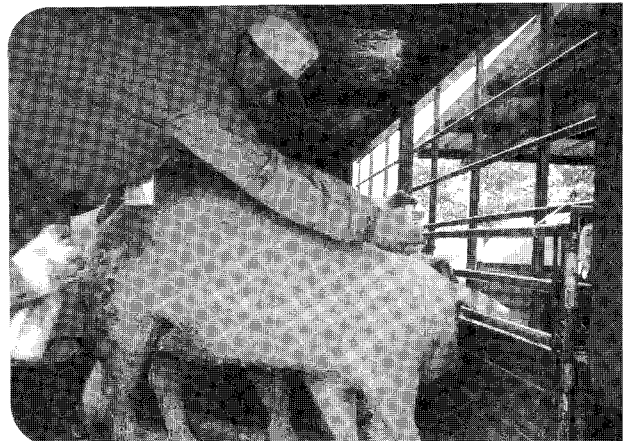
<경계지역>

○1차 접종을 완료한 날부터 최소 15일 경과후 임상관찰, 항체·항원 검사, 역학조사를 실시,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

○1차접종 완료일부터 15일 경과후 도축장 출하 허용(이동제한 기간 중에는 지정도축장)

<일반지역>

○1차접종 완료일부터 15일 경과후 도축장



▲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범 실시 모습

출하 허용(지정도축장 제한 없음)

○농장간 돼지 이동은 접촉일과 관계 없이 허용

4. 예방접종 관리대상

□ 예방약공급(실시)대상

○예방접종지역의 예방약공급반 및 예방접종반이 예방약 공급 및 예방접종 실시후 작성, 시·군(읍·면)에 제출



▲<자료사진> 예방접종 중단(2001. 12. 1) 이전 시·군공무원이 양돈농가에 돼지콜레라 백신을 나눠주고 있다.(경기 양평)

□ 예방약공급대상 및 예방접종실시대상

○예방접종지역의 시장·군수가 예방약공급(실시)대장을 취합하여 작성·관리(공급·접종대장을 첨부)

□ 농가별관리대상 및 예방접종확인서 [별표]

○농가별관리대장은 예방접종지역의 읍·면장이 작성·관리, 예방접종확인서는 축주가 작성·발급

5. 예방접종축의 출하·매매 관리

□ 출하관리

○예방접종축 출하시 축주는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고 읍·면에 신고해야 하며 축주 1부, 도축장 1부, 읍·면에 1부 보관

- 일반지역은 사전 또는 사후 신고, 이동제한지역은 사전 신고

○신고를 받은 읍·면장은 농가별관리대상 정리후 시장·군수에게 보고

- 시장·군수는 예방접종축 도축출하시 도축장의 축산물검사관으로 하여금 예방접종확

인서 확인후 도축을 허용토록 조치

□ 매매관리

○예방접종축 매매시 축주는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하고 읍·면에 신고해야 하며 축주 1부, 매입처 1부, 읍·면에 1부 보관

○신고를 받은 읍·면장은 농가별관리대상 정리후 시장·군수에게 보고

- 시장·군수는 매매가축이 관할지역 밖으로 이동되는 경우 농가별관리대상 사본을 관할 시·군에 즉시 송부(타시·도로 이동될 경우 관할 시·도지사 및 타시·도 시·도지사에게도 보고)

- 이를 받은 시·군은 예방접종실시대장과 농가별관리대장을 재작성·관리

6. 예방접종축 사후관리 점검

○관할 시·군은 읍·면의 농가별관리대상 운영실태를 2월부터 격월로 월초 점검후 접종가축의 감소추세 등 관련 현황을 5일까지 시·도 보고, 시·도는 10일까지 농림부 보고

[별표]

제 호		돼지콜레라 예방접종확인서					
농장현황	농장명	주소			사육두수		
	대표자	주민등록번호			전화번호		
임상검사	<input type="checkbox"/> 식욕결핍 <input type="checkbox"/> 변비 <input type="checkbox"/> 여러마리가 한 곳에 포개어져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설사 <input type="checkbox"/> 피부청색증(귀, 복부, 사타구니)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틀거림 <input type="checkbox"/> 뒷다리마비 <input type="checkbox"/> 최근 15일 이내 폐사두수()						
예방 접종	예방약종류	제 품 명			제조업체명		
	1차예방 접종일자				2차예방 접종일자		
매매 · 출하	농장매매 두 수	구 매 자 성명·주소			전화번호		
	농 장 출하두수	출하처			전화번호		
	가축수집 (중개)인	성 명	주 소		전화번호	차량번호	
상기 가축은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확인자 : (인)							
기재요령 :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V표시를 하고, 예방접종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돼지에 한하여 기재합니다.							

돼지콜레라 청정국 조건(OIE)

- 발생국에서 박멸정책에 의한 청정국 획득
 - 예방접종 없이 살처분하면 마지막 감염동물 살처분 후 6개월 경과
 - 예방접종과 살처분을 병행할 경우 예방접종 중단 후 1년 경과
- 과거 청정국에서 발생 다시 청정국으로 회복하기 위해선 살처분 완료 후 30일이 경과해야 함. 단,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예방접종축 전 두수 도축이 전제되어야 함
- 돼지콜레라 청정국에서 발생시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들을 포함, 살처분 완료 후 최소 30일이 경과하면 청정국 지위 회복 가능
 - 발생지 주위로 반경 3km 이내 위험지역 및 반경 10km 이내 경계지역과 같은 이동제한지역 설정
 - 발생농장 사육돼지 전 두수 살처분 및 폐기
 - 위험지역 내에서 주위농가들의 감염 가능성 판정을 위한 위험평가를 실시하되,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경 0.5km 이내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, 위험지역내 전 양돈농가의 사육돼지 전 두수 긴급 임상관찰 실시
 - 경계지역의 모든 환축은 실험실 검사 실시
 - 발생농장과 직·간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모든 양돈장과 이동제한지역 내 모든 양돈장에 대한 임상관찰·혈청검사·항원검사를 포함한 역학조사 실시
 - ※이동제한지역내 긴급예방접종이 실시되었을 경우 예방 접종축과 감염축을 감별할 타당성 있는 방법이 없는 한 예방접종축 전 두수가 도축되기 전까지는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없음